

- 대상시설: 종로소방서 신교119안전센터 (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3)
-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: 화장실 구별을 위한 점자표지판 미설치
- 시정조치 완료. (사진참조)



1. 화장실 출입구(문) 벽 1.5m
높이에 점자판 설치 완료

2. 화장실 내부에
점자판 추가 설치 완료

3. 화장실 내부에
점자판 추가 설치 완료